



2025. 11. 28.(금)

제 362 회 정례회

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

# 제안설명서

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

신 순 옥 의원

# 제안 설명서

- 안녕하십니까?  
신순옥 의원입니다.
-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-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 
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 
「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 
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 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제안 설명에 앞서,  
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아 공동  
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 
드립니다.

□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,

-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,
- 또한, 조례 문구를 정비하여 법령 및 행정 용어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,

- 안 제6조에는 실질적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방청과 경찰청 등 협력 기관이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,

- 마지막으로, 안 제11조의2에는  
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 
개인·기관·단체에 대해 포상금 또는  
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,  
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활동 참여를 보다  
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,

- 이 개정 조례안은 생명존중 정책의 현장  
실행력을 강화하고,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 
예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